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870

제출년월일 : 2023년 5월 30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시설 정의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외국인투자자문회의의 개편을 통해 시정자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정의의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2조제4호)

나. 외국인투자자문회의 근거규정 삭제(안 제3조)

다. 기타 띄어쓰기, 맞춤법 등 용어정비(안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의견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3.4.13. ~ 5.3.)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경제정책실 금융투자과 최나현(☎2133-5248)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에 의하여 위임된”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에서 위임한”으로, “외국인투자의”를 “외국인투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9항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대규모투자사업”을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급”을 “지원”으로 한다.

제7조 중 “범위안에서 지급”을 “범위에서 지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지급”을 “지원”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안에서 지급”을 “범위에서 지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를 “외국인투자기업에”로 하며,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에 대하여”를 “에게”로,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13조 중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를 “외국인투자기업에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14조 중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안”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15조 중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으로 한다.
제16조 중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으로 한다.

제17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중 “사용 등 관리”를 “사용·관리”로, “대하여 관련자료”를 “관련 자료”로, “그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19조 중 “참작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외국인투자 및 그 유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하여 서울특별시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 외국인투자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3. (생 략) 4.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 뜻은 ----------.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3. (현행과 같음) 4.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9항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외국인투자자문회의) ①시장은 외국인투자정책 수립 및 투자제도 개선에 관한 자문을	<삭 제>

위하여 외국인투자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자문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자문회의 위원은 외국인 투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내·외국인들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자문회의는 매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⑥회의에 출석하는 자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자문위원이 시장의 요청으로 투자유치 관련 행사나 각종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

에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외국인투자 유치사무의 위탁) ①시장은 대규모투자사업 및 사회기반시설 등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유치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가·단체 또는 법인 등(이하 “투자유치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외국인투자 유치사무의 위탁) ①----- 대규모 투자사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치사무의 일부를 투자유치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③ ---------- -- 지원--------.
제7조(중소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을 하는 경우에 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중소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지원) ---------- 범위에서 지원---------.
제9조(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에 대한 지원) ①시장은 법 제18조	제9조(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에 대한 지원) ①----------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전력·상하수도·통신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 ---------- ---------- ---------- ---------- ---------- 지원-------.
제10조(외국인투자환경의 조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 친화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비 또는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 3. (생 략)	제10조(외국인투자환경의 조성에 대한 지원) ---------- ---------- ---------- ---------- ---------- ---------- 범위에서 지원--- -------. 1. ~ 3. (현행과 같음)
제12조(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및 임대료의 감면)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시의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매각하거나 재산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제12조(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및 임대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에 ---------- ---------- ---------- -에 따라 ---------- ---------- ---------- ---. ②----------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의 재산을 임대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에게 ----------에 따라 ----------.
제13조(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 시장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 ---------- 외국인투자기업에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
제14조(현금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고도기술의 수반여부, 기술이전의 효과, 고용창출의 규모 및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의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현금지원) ---- ---------- -----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
제15조(고용보조금)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20조제4항에	제15조(고용보조금) ---------- ----------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고용규모 및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효과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
제16조(교육훈련보조금)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고용규모 및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효과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교육훈련보조금) ----------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
제17조(지원액의 한도) 이 조례에 의하여 시장이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지원하는 자금의 총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7조(지원액의 한도) ---------- 따라 ----------.
제18조(사후관리) ①이 조례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받은 외국인투자기업 등은 지원을 신청한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에만 지원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사후관리) ①------ 따라 ----------.

②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자금의 사용 등 관리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외국인투자기업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따라 ---------- 사용·관리---------- ---------- 관련 자료---------- 소속 공무원---------- ----------.
제19조(그 밖의 지원)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투자규모 및 고용효과 등을 참작하여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건축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용적률의 비율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완화에 적용하는 규정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다.	제19조(그 밖의 지원) ---------- ---------- ---------- ---------- ----- 고려하여 ---------- ---------- ---------- ----------. ---------- ---------- ----------.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의 개정내용은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의 정의관련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른 인용조문을 현행화 하고, 외국인투자자문회의의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별도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함

4. 작성자

서울특별시 금융투자과 최나현 (☏ 2133-5248)